의안번호	2209624
의 뢰 인	어기구의원
회 답 일	2024.7.24.
추계번호	24B225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의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율을 변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982억원, 2029년 1,113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222억원(연평균 1,044억원)으로 추계됨

○ **(국 비)** 5년간 2조 3,239억원(연평균 4,648억원) **증가(↑)**

○ **(지방비)** 5년간 1조 8,016억원(연평균 3,603억원) **감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안 제19조제1항 (재정지원) -국비지방비 분담률 변경	추가재정소요	982	1,010	1,042	1,076	1,113	5,222	1,044
	- 국비	3,985	4,287	4,617	4,978	5,373	23,239	4,648
	- 지방비	-3,003	-3,276	-3,575	-3,902	-4,260	-18,016	-3,603

주: 1. 농어업재해보험료의 지원율은 국비 80%, 지방비 10%, 자부담 10%로 가정
- 음수(마이너스)인 경우 지출액이 감소함을 의미

2. 추계 대상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정
- 농업수입보장보험 및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전체 농업재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함을 고려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
- 농작물재해보험에 연평균 증가율 9.40% 적용(최근 5년('18~'22년)간 주요작물 보험요율 연평균 증가율)

3. 추계기간 동안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변동하지 않고, 2024년 기준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제2조제1호(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1. "농어업재해"란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일조량(日照量) 부족·병충해·조수해(鳥獸害)·질병 또는 화재(이하 "농업재해"라 함)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질병 또는 화재(이하 "어업재해"라 함)를 말함 ※ 농업재해에 '일조량(日照量) 부족'을 포함하는 경우,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임산물이 확대되어, 이에 대한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국가·지자체의 보험료 지원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2	안 제19조제1항 (재정지원)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이상을 지원하여야 하며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 이상을 추가로 지원하여야 함	의무·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2조(정의)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농업재해에 '일조량(日照量) 부족'을 포함하는 경우,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임산물이 확대되어, 이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보험료 지원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그러나 향후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 농가 및 피해규모, 해당 농가의 보험가입 여부, 이에 따른 재해피해 보상금 지원 여부 등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2	안 제19조제1항 (재정지원)	○	• 정부의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율 변경 – 정부: 80% 이상 – 지자체: 10% 이상 * 현재 농어업재해보험의 국비 지원율은 약 50%, 지방비 지원율은 보험별로 약 13~40% 수준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료의 국비 지원율을 80%, 지방비 지원율

을 10%로, 자부담은 10%로 가정하고, 이에 따른 국비 및 지방비 증감액을 합산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함

○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보험의 국비 지원율을 80% 이상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비 지원율은 10%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지원율을 특정하기 곤란

○ 따라서 국비 지원율을 개정안에 따른 하한선인 80%로, 지방비 지원율은 10%로 가정함

- 현재 농어업재해보험의 국비 지원율은 약 50%, 지방비 지원율은 보험별로 약 13~40% 수준이며, 개정안에 따라 국비 지원금은 증가하고, 지방비 지원금은 보험별로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됨

※ 보험별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율은 [참고자료 3]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보험금 지급 현황 참고

추가재정소요 = (개정안에 따른 국비·지방비 증감액) − (현행 국비·지방비(기준선))

❑ 추계 대상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정

○ 농업수입보장보험 및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전체 농업재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함[1]을 고려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

○ 추계기간 동안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2]은 변동하지 않고, 2024년 기준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 향후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증가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액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예측이 불가함

❑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

1) 최근 4년(2021~2024년)간 농업재해보험 연평균 예산 대비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비율은 0.63%, 가축질병치료보험의 비율은 0.27% 수준

2) 농어업재해보험대상 품목의 추이는 다음과 같음(2024년 기준)
- **(농작물재해보험)** ('07) 10 → ('08) 15 → ('09) 20 → ('10) 25 → ('11) 30 → ('12) 35 → ('13) 40 → ('16) 50 → ('19) 62 → ('23) 70 → ('24) 73품목
- **(가축재해보험)** ('07~'08) 11 → ('09) 13 → ('10) 14 → ('11) 15 → ('12~'24) 16품목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15) 21 → ('16) 24 → ('17) 27 → ('18~'24) 28품목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개요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현행법에 따라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운영중

○ **(농업재해보험)** 농가 경영안정 및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여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 지원

-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수입보장보험, 가축질병치료보험을 운영중이며, 보험가입자(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지원

○ **(양식어업재해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어업 생산활동에 기여

- 양식수산물 및 그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 지원

※ [참고자료 1]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축종 도입현황,
[참고자료 2]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대상지역 현황,
[참고자료 3]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보험금 지급 현황 참고

[표 2] 농어업재해보험 제도

구분	종류	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율 (국비)
농업재해보험 (총 97품목)	농작물재해보험 (73품목)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자, 콩, 양파, 벼(일반벼/조사료용벼), 배추, 양상추 등	순보험료의 33~60%
	가축재해보험 (16품목)	소, 돼지, 가금(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 말, 기타(사슴·양·벌·토끼·오소리)	영업보험료의 50%
	농업수입보장보험 (7품목)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가을감자, 양배추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
	가축질병치료보험 (1품목)	소	영업보험료의 50%
양식어업재해보험 (총 28품목)	본사업 (17품목)	넙치, 전복, 다시마, 굴, 홍합 등	순보험료의 50%
	시범사업 (11품목)	김, 멍게, 뱀장어, 미역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농업재해보험 및 양식어업재해보험 예결산 현황: 2021~2024년

(단위: 백만원)

소관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세부사업	내역사업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351,871	353,707	508,820	434,451[1)]	607,729	531,801	535,584
		가축 재해보험	119,093	117,708	119,093	113,684	119,093	110,553	112,220
		농업수입 보장보험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8,100
		가축질병 치료보험	2,000	1,549	2,000	1,778	1,600	1,593	1,200
		소계	475,464	475,464	632,413	552,413	730,922	646,447	657,104
	농작물재해보험 운영비지원		83,691	83,691	109,791	109,791	98,811	98,811	98,811
	소계		559,155	559,155	795,464	662,204	829,733	745,258	755,915
해양수산부	양식어업 재해보험	순보험료지원	16,267	16,267	15,295	12,443	13,899	13,899	15,285
		운영사업비 지원	11,869	11,792	9,603	8,891	8,727	8,124	8,422
		양식보험사업 관리위탁	153	230	403	443	403	356	403
	소계		28,289	28,289	25,301	21,777	23,029	22,379	24,110

주: 1) 농특회계 세수 부족으로 인한 미집행 부분에 대해 '23년 이월 및 집행 완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나. 재정지원(안 제19조제1항)

❑ 최근 3년(2021~2023년)간 농어업재해보험료 및 국비, 지방비, 자부담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농작물재해보험)** 연평균 보험료는 9,459억 5,400만원으로 국비 49.0%, 지방비 38.1%, 자부담 12.9%

○ **(가축재해보험)** 연평균 보험료는 2,211억 2,600만원으로 국비 48.2%, 지방비 12.0%,[3)] 자부담 39.8%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연평균 보험료는 245억 8,900만원으로 국비 50.4%, 지방비 31.7%, 자부담 17.9%[4)]

3) 개정안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지방비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에, 가축재해보험은 지방비 부담(12.0% → 20%)이 늘어나게 됨

4) 다만, 2021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경우, 통계의 한계로 지방비 및 자부담의 구분이 불가하며, 이 둘의

[표 4] 농어업재해보험료 및 국비·지방비 지원현황: 2021~2023년

(단위: 백만원, %)

유형		연도	보험료 (A=B+C+D)	국비		지방비		자부담	
				지원금 (B)	비율 (B/A)	지원금 (C)	비율 (C/A)	부담금 (D)	비율 (D/A)
농업 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2023	1,039,681	506,116	48.7%	404,095	38.9%	129,469	12.5%
		2022	949,656	466,677	49.1%	363,288	38.3%	119,692	12.6%
		2021	848,524	417,546	49.2%	313,384	36.9%	117,595	13.9%
		연평균	945,954	463,446	49.0%	360,256	38.1%	122,252	12.9%
	가축 재해보험	2023	214,047	103,491	48.3%	26,858	12.5%	83,697	39.1%
		2022	219,002	105,474	48.2%	26,877	12.3%	86,651	39.6%
		2021	230,330	110,741	48.1%	25,629	11.1%	93,960	40.8%
		연평균	221,126	106,569	48.2%	26,455	12.0%	88,103	39.8%
양식어업 재해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2023	29,339	14,728	50.2%	9,310	31.7%	5,301	18.1%
		2022	24,349	12,424	51.0%	7,706	31.6%	4,219	17.3%
		2021	20,079	10,013	49.9%	6,364[1)]	31.7%[1)]	3,702[1)]	18.4%
		연평균	24,589	12,388	50.4%	7,793	31.7%	4,407	17.9%

주: 1) 2021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경우, 지방비 및 자부담 합산 금액은 10,066백만원이며 구분이 불가함. 따라서 2022~2023년 지방비 지원금 평균 비율(31.7%)을 전체 보험료에 적용하여 2021년 지방비 지원금을 산출(6,364백만원)하고, 이를 합산금액에서 차감하여 자부담 금액(3,702백만원=10,066백만원−6,364백만원) 산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른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율 적용 금액에서, 현행 국비 및 지방비 지원액(최근 3년('21~'23년)간 연평균 지원액, 기준선)을 차감하여, 보험별 추가재정소요를 계산하고, 이를 단년도(2024년) 기준 금액으로 설정

합산 금액은 10,066백만원임. 따라서 2022~2023년 지방비 지원금 평균 비율(31.7%)을 전체 보험료에 적용하여 2021년 지방비 지원금을 산출(6,364백만원)하고, 이를 합산금액(지방비 및 자부담)에서 차감하여 자부담 금액(3,702백만원=10,066백만원−6,364백만원) 산출

[표 5] 국비·지방비 지원금 추가재정소요: 단년도(2024년) 기준

(단위: 백만원, %)

		보험료 합계 (A=B+C+D)	국비		지방비		자부담	
			지원금 (B)	비율 (B/A)	지원금 (C)	비율 (C/A)	부담금 (D)	비율 (D/A)
현행 (A)	농작물 재해보험	945,954	463,446	49.0%	360,256	38.1%	122,252	12.9%
	가축 재해보험	221,126	106,569	48.2%	26,455	12.0%	88,103	39.8%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24,589	12,388	50.4%	7,793	31.7%	4,407	17.9%
	소계	1,191,669	582,403	—	394,504	—	214,762	—
개정안 (B)	농작물 재해보험	945,954	756,763	80.0%	94,595	10.0%	94,595	10.0%
	가축 재해보험	221,126	176,901	80.0%	22,113	10.0%	22,113	10.0%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24,589	19,671	80.0%	2,459	10.0%	2,459	10.0%
	소계	1,191,669	953,335	—	119,167	—	119,167	—
추가재정소요 (C=B−A)	농작물 재해보험	—	293,317	—	−265,660	—	−27,657	—
	가축 재해보험	—	70,332	—	−4,342	—	−65,990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	7,283	—	−5,334	—	−1,948	—
	합계	—	370,932	—	−275,337	—	−95,595	—

주: 음수(마이너스)인 경우 지출액이 감소함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이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2024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II−1)」를 참고하여 추계기간 동안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률 9.40%를 적용함

- 농작물재해보험 : 9.40%(최근 5년('18~'22년)간 주요작물 보험요율 연평균 증가율)
- 가축재해보험: 0%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변동 없음)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0% (최근 3년간 순보험요율 변동 없음[5])

❑ 추계결과, 농어업재해보험의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율을 변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222억 1,600만원(연평균 1,044억 4,300만원)으로 추계됨

○ 국 비: 5년간 2조 3,238억 6,500만원(연평균 4,647억 7,300만원) 증가

○ 지방비: 5년간 1조 8,016억 4,800만원(연평균 3,603억 3,000만원) 감소

5) 다만, 가입어가 수 확대, 가입률 목표 등에 따른 예산 증감이 있었음
가입어가: ('21) 2,194어가 → ('22) 2,733 → ('23) 2,953→ ('24) 3,248

[표 6] 농어업재해보험 국비·지방비 지원율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보험유형	보험료 지원주체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농작물 재해보험	국비	320,888	351,052	384,051	420,152	459,646	1,935,788	387,158
	지방비	−290,632	−317,952	−347,839	−380,536	−416,307	−1,753,266	−350,653
	소계	30,256	33,100	36,211	39,615	43,339	182,522	36,504
가축 재해보험	국비	70,332	70,332	70,332	70,332	70,332	351,662	70,332
	지방비	−4,342	−4,342	−4,342	−4,342	−4,342	−21,710	−4,342
	소계	65,990	65,990	65,990	65,990	65,990	329,952	65,990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국비	7,283	7,283	7,283	7,283	7,283	36,414	7,283
	지방비	−5,334	−5,334	−5,334	−5,334	−5,334	−26,672	−5,334
	소계	1,948	1,948	1,948	1,948	1,948	9,742	1,948
합계		98,195	101,039	104,150	107,554	111,278	522,216	104,443
	국비	398,504	428,667	461,666	497,767	537,261	2,323,865	464,773
	지방비	−300,309	−327,628	−357,516	−390,213	−425,983	−1,801,648	−360,330

주: 1. 농어업재해보험료의 지원율은 국비 80%, 지방비 10%, 자부담 10%로 가정
- 음수(마이너스)인 경우 지출액이 감소함을 의미

2. 추계 대상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정
- 농업수입보장보험 및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전체 농업재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함을 고려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
- 농작물재해보험에 연평균 증가율 9.40% 적용(최근 5년('18~'22년)간 주요작물 보험요율 연평균 증가율)

3. 추계기간 동안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변동하지 않고, 2024년 기준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Ⅳ.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국비 지원율을 80%로, 지방비 지원율을 10%로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향후 지원율 변경, 보험대상 품목 및 대상자 확대, 보험료율 증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축종 도입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6]

❑ 농작물재해보험

연도별	대상 품목	누계
2001	**사과, 배**	2
2002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온주밀감류/만감류)	6
2006	**떫은감**	7
2007	**밤, 참다래, 자두**	10
2008	**감자**(봄감자(경북, 충남)/고랭지감자/가을감자), **콩, 양파, 고추, 시설(수박)**	15
2009	**고구마, 옥수수**(일반옥수수/조사료용옥수수), **마늘, 매실, 벼**(일반벼/조사료용벼)	20
2010	**시설(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대추**	25
2011	**시설(풋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 **복분자**(고창, 정읍, 순창, 함평, 담양, 장성)	30
2012	**인삼, 시설(멜론, 파프리카), 오디**(전북, 전남, 상주, 안동), **차**(보성, 광양, 구례, 하동)	35
2013	**시설(부추, 시금치, 상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40
2014	**시설(배추, 가지, 파)**	43
2015	**시설(무, 백합, 카네이션)**	46
2016	**밀, 시설(미나리), 오미자, 양배추**(제주, 무안)	50
2017	**시설(쑥갓), 무화과**(영암, 신안, 목포, 무안, 해남), **유자**(고흥, 완도, 진도, 거제, 남해, 통영)	53
2018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메밀**(전남, 제주), **브로콜리**(제주, 충북)	57
2019	**배추**(고랭지 / 봄배추 - 평창, 영양, 해남 / 월동 - 해남 / 가을 - 괴산, 해남, 영양), **무**(고랭지 / 가을 - 고창, 영암, 무안, 예천, 나주, 당진, 홍천, 충주 / 월동 - 제주), **당근**(제주), **단호박**(경기, 제주), **파**(대파 / 쪽파·실파 - 아산, 보성)	62
2020	**호두**(김천), **팥, 시금치,** **보리**(해남, 보성, 김제, 군산, 밀양), **살구**(영천)	67
2023	**귀리**(강진, 해남), **시설(감자)**(김제, 부안), **양상추**(횡성, 평창)	70
2024	**두릅**(순창, 광양, 순천, 하동), **블루베리**(순창, 담양, 평택, 상주, 의성, 영동), **수박**(봉화, 안동, 영주, 예천, 고창, 진안)	73
합계	**73개 품목**(85개 상품)	

* 밑줄 친 품목은 본사업 품목임

6)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23~'27)」, 2023.1. 등)

❑ 가축재해보험

연도별	대상 축종	누계
1997	소	1
2000	돼지, 말	3
2002	닭	4
2004	오리	5
2005	꿩, 메추리	7
2006	칠면조, 사슴	9
2007	타조, 거위	11
2008	양	12
2009	꿀벌	13
2010	토끼	14
2011	관상조	15
2012	오소리	16
합계	**16개 축종**	

❑ 수입보장보험

연도별	대상 품목	누계
2015	콩, 포도, 양파	3
2016	마늘	4
2017	고구마, 가을감자	6
2018	양배추	7
2024	보리, 옥수수	9
합계	**9개 품목**	

[참고자료 2]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대상지역 현황

(해양수산부 제출자료)[7]

❑ 보험 대상품목(총 28개)

○ **본사업 품목(17)**: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숭어, 능성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톳,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11)**: 멍게, 미역, 김, 뱀장어, 송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및 그 시설물

❑ 보험사업 실시지역

○ 본사업 품목(17): 전국

○ 시범사업 품목(11): 보험의 효용성·실시 가능성 등 검증을 위해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

<시범사업 품목별 사업지역 현황>

품목명	사업지역
김	전남 해남군, 신안군, 고흥군, 완도군, 장흥군, 목포시, 무안군, 진도군, 함평군 충남 서천군, 태안군, 보령시/ 경기 안산시, 화성시/ 전북 군산시, 부안군/ 부산 강서구 인천 옹진군, 강화군(단, 괭생이 모자반 및 유빙 특약은 특정지역만 가입 가능)
멍게	경남 통영시, 남해군, 고성군, 거제시/ 강원 고성군, 삼척시, 강릉시, 양양군, 속초시 경북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제주도/ 전남 여수시
미역	전남 고흥군, 진도군/ 부산 기장군/ 경남 통영시, 거제시
뱀장어	전남 영광군, 함평군, 강진군, 무안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영암군, 나주시, 순천시,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해남군, 장성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익산시/ 충북 충주시
송어	강원 영월군, 정선군, 춘천시, 평창군, 삼척시, 철원군, 횡성군, 태백시, 홍천군, 화천군 경북 구미시, 상주시/ 충북 보은군, 충주시, 청주시, 제천시, 괴산군/ 경기 가평군
미더덕	경남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오만둥이	경남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터봇	제주도
메기	충남 홍성군,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아산시, 예산군, 청양군/ 전북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고창군, 장수군, 임실군
향어	전북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고창군/ 전남 함평군
전복종자	전남 진도군, 해남군, 완도군

7) 해양수산부 제출자료(「제1차('23~'27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2023. 6. 등)

[참고자료 3]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 보험금 지급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농업재해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단위: ha, 호, 백만원)

연도	가입 면적 (ha)	가입 농가수 (호)	보험 가입률 (%)	순보험료 (A)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			자부담		ha당 순보험료 (만원)	ha당 농가부담 보험료 (만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지원금 (B)	국고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농가 부담금 (E)	농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3	636,727	547,183	52.0	1,039,681	506,116	48.7%	130,793	273,302	38.9%	129,469	12.5%	163.3	20.3	215,368	1,004,249
2022	609,793	512,995	49.9	949,656	466,677	49.1%	116,121	247,167	38.3%	119,692	12.6%	155.7	19.6	162,232	555,777
2021	594,250	497,884	49.4	848,524	417,546	49.2%	100,073	213,311	36.9%	117,595	13.9%	142.8	19.8	172,822	573,989
2020	550,174	440,173	45.0	722,223	355,306	49.2%	84,360	180,563	36.7%	101,994	14.1%	131.3	18.5	225,240	1,015,827
2019	456,024	339,582	38.8	511,146	252,154	49.3%	62,068	123,237	36.3%	73,688	14.4%	112.1	16.2	190,492	898,048
2018	376,593	275,133	32.9	550,149	271,334	49.3%	57,973	126,858	33.6%	93,984	17.1%	146.1	25.0	85,099	534,450

○ 가축재해보험

(단위: 천두, 호, 백만원)

연도	가입 두수 (천두)	가입 농가수 (호)	보험 가입률 (%)	영업 보험료 (A)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			자부담		천두당 영업 보험료 (만원)	천두당 농가부담 보험료 (만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지원금 (B)	국고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농가 부담금 (E)	농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3	290,820	36,333	94.4	214,047	103,491	48.3%	8,071	18,787	12.5%	83,697	39.1%	73.6	28.8	41,967	164,786
2022	288,293	34,023	94.7	219,002	105,474	48.2%	7,929	18,948	12.3%	86,651	39.6%	76.0	30.1	39,181	167,904
2021	285,075	22,791	93.7	230,330	110,741	48.1%	7,859	17,770	11.1%	93,960	40.8%	80.8	33.0	34,600	146,247
2020	276,486	21,760	92.8	225,706	107,528	47.6%	7,373	16,697	10.7%	94,108	41.7%	81.6	34.0	34,739	147,730
2019	284,785	21,448	93.3	214,860	105,619	49.2%	6,915	15,187	10.3%	87,139	40.6%	75.4	30.6	35,996	174,302
2018	278,139	19,706	93.0	187,405	92,003	49.1%	5,400	12,470	9.5%	77,531	41.4%	67.4	27.9	32,356	239,275

○ 농업수입보장보험

(단위: ha, 호, 백만원)

연도	가입 면적 (ha)	가입 농가수 (호)	보험 가입률 (%)	순보험료 (A)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			자부담		ha당 순보험료 (만원)	ha당 농가부담 보험료 (만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지원금 (B)	국고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농가 부담금 (E)	농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3	1,233	1,652	3.3	4,299	2,149	50.0%	488	1,185	38.9%	476	11.1%	348.7	38.6	1,507	5,858
2022	1,141	1,566	3.2	4,021	2,011	50.0%	473	1,093	38.9%	445	11.1%	352.4	39.0	1,313	4,020
2021	1,007	1,457	3.0	3,946	1,973	50.0%	442	1,029	37.3%	502	12.7%	392.1	49.8	1,024	2,460
2020	1,561	2,006	4.2	6,638	3,319	50.0%	846	1,624	37.2%	849	12.8%	425.2	54.4	1,153	3,451
2019	1,207	1,643	3.7	6,579	3,290	50.0%	776	1,686	37.4%	828	12.6%	545.2	68.6	1,662	10,912
2018	2,121	1,979	7.3	7,291	3,646	50.0%	821	1,592	33.1%	1,233	16.9%	343.8	58.1	5,595	49,763

○ 가축질병치료보험

(단위: 천두, 호, 백만원)

연도	가입 두수 (천두)	가입 농가수 (호)	보험가입률 (%)	영업보험료 (A)	국고지원		지방비 지원[1]			자부담		천두당 영업보험료(원)	천두당 농가부담보험료(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지원금 (B)	국고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농가부담 (E)	농가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3	39	748	7.3	3,182	1,591	50%				1,591	50%	81,747,021	40,873,510	33,503	2,862
2022	44	872	8.3	3,555	1,778	50%				1,778	50%	80,549,214	40,274,607	32,129	2,826
2021	41	849	9.1	3,096	1,548	50%				1,548	50%	76,300,873	38,150,428	27,873	2,502
2020	32	687	7.1	2,501	1,250	50%				1,250	50%	79,154,851	39,577,238	19,700	1,715
2019	31	573	13.3	2,268	1,134	50%				1,134	50%	72,942,016	36,483,340	7,796	717
2018	7	176	6.8	537	268	50%				268	50%	71,677,662	35,838,838	63	7

주: 1)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시범사업지역 지자체와 가입영업점(농축협)에서 지방비를 직접 정산하여 보험사업자가 지방비 지원금액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단위: 호, 백만원. 신계약 기준)

연도	가입 어가수 (호)	보험가입률 (%)	순보험료 (A)	국고지원(순보험료)		지방비 지원[1]			자부담[2]		어가당 순보험료 (천원)	부가 보험료 (국고지원)	보험금 지급 실적	
				국고 지원금 (B)	국고 지원율 (B/A)	시도 지원금 (C)	시군구 지원금 (D)	지방비 지원율 (C+D)/A	어가부담 (E)	어가 부담률 (E/A)			건수 (건)	지급액 (백만원)
2023	2,936	39.8	29,339	14,728	50	3,463	5,847	32	5,301	18	1,806	6,225	238	10,558
2022	2,733	37.0	24,349	12,424	51	2,803	4,903	32	4,219	17	1,544	4,638	377	9,564
2021	2,194	29.7	20,079	10,013	50	—	—	—	10,066	50	4,588	3,749	238	10,762
2020	2,682	28.0	24,557	12,278	50	—	—	—	12,279	50	4,578	3,642	806	33,195
2019	3,744	39.1	32,820	16,410	50	—	—	—	16,410	50	4,383	6,380	2,617	123,774
2018	4,250	44.3	41,981	20,990	50	—	—	—	20,991	50	4,939	10,359	1,275	75,775

주: 보험료는 환급금이 차감된 금액이며, 보험금은 지급준비금은 제외된 금액임

1) '22년 이전 지방비지원의 경우 지자체와 회원조합이 수기 정산하여 실지원금 파악이 어려우며, '22년 이후 국고지원과 함께 즉시 지원하는 전산화 시스템 구축 완료를 통해 실지원금 확인 가능

2) '22년 이전 자부담액은 지방비가 포함된 금액임